메테오시뮬레이션 출장여비 지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제2조【여비의 종류】

제3조【여비의 구분】

제4조【여비의 계산】

제5조【여비지급】

제6조【여행일수의 계산 및 출장 연장】

제7조【신분변경 및 지급기준 변경시 여비】

제8조 【여비의 선지급】

제9조 【여비의 불지급】

제10조【상시출장사원】

제11조【여행중의 사사】

제12조【사고 등 제경비】

제13조【출장결과보고】

제2장 국내여비

제14조【지급기준】

제15조【당일출장】

제16조【장기출장】

제3장 국외여비

제17조【국외출장】

제18조【지급기준】

제19조【예외규정】

제4장 전임여비

제20조【전임여비】

제21조【여비계산】

제22조【전임수당】

제23조【가족여비의 지급제한】

제24조 【신규채용자 등의 여비】

제25조【수습기간중의 여비】

제26조 【질병간호를 위한 가족의 여비】

제27조 【퇴직 및 휴직자의 여비】

[별표 1] 국내 여비 지급표

[별표 2]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

[별표 3] 국외 여비 지급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회사의 임원 및 사원이 회사의 명에 의하여 국내외에 출장, 파견, 부임 등의 사유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제 3 조 【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 해외여비, 전임여비의 3가지로 한다.

- 1. 국내여비 : 국내에 당일 또는 2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 2. 국외여비 : 외국에 여행하는 경우
- 3. 전임여비 : 전임 또는 근무지의 변경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

제 4 조 【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실비를 정산 지급한다.

제 5 조【여비지급】

- ①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여비로서 부족한 경우에는 사장 의 승인을 얻어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메테오시뮬레이션의 여비는 별표 1, 2, 3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 6 조 【여행일수의 계산 및 출장 연장】

- ①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 ② 여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일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표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 또는 정산한다.

제 7 조 【신분변경 및 지급기준 변경시 여비】

- ① 출장 중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한다.
- ② 출장 중 여비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잔여기간도 종전의 기준으로 지급하되 국내출장 의 경우에 잔여출장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와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 8 조 【여비의 선지급】

- ① 여비는 실제 지급할 수 있는 예정액범위 내에서(별표 1, 별표 3에 따라) 계산하여 선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지급을 받은 자는 귀임 후 3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3-08-31]

제 9 조 【여비의 불지급】

- ①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편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사외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회사시설이 있는 곳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이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상시출장사원】

-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원에게는 상시출장여비를 지급한다.
- 1. 회사매출금에 대한 수납업무 등으로 상시출장을 요하는 사원
- 2. 회사제품의 운송업무 등으로 상시출장을 요하는 사원
- 3. 기타 회사업무로서 상시출장을 요하는 사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출장여비의 1일당 지급액은 당해년도 예산편성시 결정한다.

제11조【여행중의 사사】

여행중에 사사로 우로를 통과 또는 체류하는 경우에는 이에 요하는 노정 및 일수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고 등 제경비】

출장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출장지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의사진단서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유가 명백해졌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체류기간중의 일당과 숙박비, 의료비 및 기타 잡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출장결과보고】

해외출장에서 귀임한 사원은 30일 이내에 출장 결과를 보고한다. [개정 2023-08-31]

제 2 장 국내여비

제14조【지급기준】

- ① 국내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일비등으로 구분한다.
- ② 국내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철도 및 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고 출장하는 사원의 신청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통 사정이 철도 및 버스를 이용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택시 또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가 있다.
- ③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의 지급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 1. 철도운임은 실비 지급할 수 있다.
 - 2. 선박운임은 실비 지급할 수 있다.
 - 3. 항공운임은 실비 지급할 수 있다.
 - 4. 자동차운임은 통행료 실비 지급 가능하고, 오피넷 사이트를 통해 거리 계산에 대한 유류비 지급이 가능하다.
- ④ 일비, 식비, 숙박비의 지급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 ⑤ 숙박료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 ⑤ 업무상 부득이 숙박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식비 및 숙박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당일출장】

당일 출장에 대하여는 교통비,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내출장자 후 귀임자는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교통 실비를 지급한다.

제16조【 장기출장 】

동일지역에 연속 출장일수가 100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일수에 대한 일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8-31]

제 3 장 국외여비

제17조【국외출장】

국외출장의 경우는 다음 각호에 따른 여비를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 1. 교통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 2. 국외출장자의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준비금
- 3. 일비
- 4. 여행잡비(예방주사료, 여권교부수수료, 사증수수료, 외화교환수수료, 출입국세의 실비등)

제18조【지급기준】

- ①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를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일비, 식비 및 숙박비는 출국일 및 입국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월력에 의하여 지급한다.
- ③ 국외 출장 시 대표 및 임원, 사원에게는 여행자보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19조【예외규정】

- ① 정부기관 및 기타 단체가 주관하는 국외여행에 있어서는 이 규정이 정함에도 불구하고 초청한 기관의 결정에 따라 여비를 증감할 수 있다.
- ② 업무상 또는 출장지의 숙박시설 사정으로 부득이 규정보다 높은 숙박시설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증빙서와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실비정산한다.

제 4 장 전임여비

제20조【전임여비】

전임의 명을 받고 임지에 주거를 이전하는 전임여비로서 본인과 동반하는 가족에 대하여 교통비, 일당, 숙박료 및 전임수당을 지급한다.

제21조【여비계산】

- ① 전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한 여비계산은 전임소요일수에 대한 출장여비에 의한다.
- ② 동반할 가족에 대하여는 교통비 실비와 각 인당 본인일당의 반액을 지급한다.

제22조【전임수당】

단신전임의 경우에는 월기본급의 1개월분, 가족동반시에는 월기본급의 2개월분을 전임수당으로 지급한다.

제23조【가족여비의 지급제한】

전임의 명을 받은 자가 6개월 이내에 그 가족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신규채용자 등의 여비】

신규로 채용 또는 복직되어 부임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소정의 전임여비를 지급한다.

제25조 【수습기간중의 여비】

수습사원이 수습기간중 부임하는 경우에는 부임지까지의 소요일수에 대한 출장여비만을 지급한다.

제26조 【질병간호를 위한 가족의 여비】

출장자 또는 전임자가 여행중 상병에 걸려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가족이 간호를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가족 1인에 한하여 본인과 동일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27조 【퇴직 및 휴직자의 여비】

퇴직자 또는 휴직자가 사무인계, 잔무처리 등의 사무로 여행할 때에는 전직위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2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메테오시뮬레이션

대표: 김 지 태



[별표 1]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운임	(1일당)	(1박당)	(1일당)
대표 및 사원	실비	실비	실비	실비	30,000	실비 (상한액: 없음) [개정 2023-09-22]	30,000

- 비고: 1.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 으로 한다.
 -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3. 친지 숙박의 경우 1박 30,000원 청구가 가능하다. [개정 2023-08-31]

[별표 2]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

구분	항공운임		
대표	실비(1등석-퍼스트)		
임원 및 사원	실비(2등석-비즈니스, 이코노미)		

[별표 3]

국외 여비 지급표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국가별)	일비	숙박비	식비
	가	70	실비(상한액: 250)	90
대표, 임원 및 사원	나	60	실비(상한액: 220)	80
	다	50	실비(상한액: 180)	70
	라	40	실비(상한액: 150)	60

※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가. 가등급: 도쿄, 미국(괌 제외), 영국, 모스크바, 파리, 홍콩, 스위스, 싱가포르, 노르웨이

나. 나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상하이,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
-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 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 니다드토바고, 괌
-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 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에스파냐, 조지아
- 4) 중동·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 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 2) 남·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 3.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따로 증빙이 필요없다.